

##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교부 불가자 공고

(공고기간: 2022.11.10.~2022.11.30.)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에 의하여 주민등록증발급통지서 교부불가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발급 공고하오니 아래 대상자는 2022.12.01. ~ 2023.11.30 까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의 사진 1매(3.5cm×4.5cm), 학생증 또는 국가기관등에서 발급한 증명서(사진 부착된 것이어야 함), 증명서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지 관할 통장의 확인을 받거나 17세 이상의 동일세대원·직계혈족·형제자매와 동행하여 서대문구내 주민센터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11월 10일



연번	성명	발급기간	주소	비고
	생년월일	공고사유 / 공고일		
1	강*현	2022.12.01.~2023.11.30.	서대문구 문화촌길 6-24	
	2005.11.11	폐문부재 주민등록증발급통지 불능/2022.11.10.		
2	윤*원	2022.12.01.~2023.11.30.	서대문구 문화촌길 6-24	
	2005.11.11	폐문부재 주민등록증발급통지 불능/2022.11.10.		
3	윤*웅	2022.12.01.~2023.11.30.	서대문구 문화촌길 6-24	
	2005.11.11	폐문부재 주민등록증발급통지 불능/2022.11.10.		
4	김*민	2022.12.01.~2023.11.30.	서대문구 문화촌길 6-24	
	2005.11.05	폐문부재 주민등록증발급통지 불능/2022.11.10.		
5	박*우	2022.12.01.~2023.11.30.	서대문구 세무서2길 64	
	2005.11.10	폐문부재 주민등록증발급통지 불능/2022.11.10.		

※ 위 기간 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40조에 따라서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담당자: 박정윤 문의전화 02-330-8422)